

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출일 : 2002. 10. 17.
- 제출자 : 정화석의원외 4명

나. 회부일자 : 2002. 10. 17.

다. 상정일자 : 2002. 10. 22.

라. 의안번호 : 제 2002 - 44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“간사”의 직명을 변경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직명 변경. (안 제11조 제목, 제1항내지 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 안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는 간사의 직명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개정 조례 안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는 간사의 직명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생략